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항 :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의·분석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

- 제1항 :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이하 2호 ~ 7호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 제1항 :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3.4호 생략
 5. 잡종재산 - 제1호내지 제4호외의 모든 재산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생략
- 제2항 :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98. 7. 16 개정)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에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에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제3항 ~ 제5항 생략

●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1항 :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항 : 생략

2. 검토의견

-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남부권지역 주민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호원 도서관을 장호원읍 장호원리 진암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유지 3,000㎡의 부지에 1,000㎡ 규모로 국도비 및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제40회 - 1차 자치행정위원회)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